

수원지방법원 2021. 5. 6 선고 2020나6585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혁

피고, 항소인 주식회사 E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학, 이영실

변 론 종 결 2021. 3. 18.

판 결 선 고 2021. 5. 6.

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. 4. 23. 선고 2018가단56508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주식회사 J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. 10. 19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13,2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0. 19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

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제11쪽 밑에서 5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갑 제15호증, 을나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(가치번호 포함)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, 즉 피고 E는 2015년경부터 2018. 10.경까지 원고와 6차례에 걸쳐 중고차 매매거래를 해 온 사실,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전에 피고 측 영업사원 T에게 이 사건 제2자동차를 비롯한 총 3대의 중고거래를 의뢰하였고, T는 차량 3대 모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제2자동차의 압류 해제를 요청한 사실,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상 이 사건 제2자동차의 2017. 7.경 ~ 2017. 12.경 평균 매각가액은 2,450만 원이고, 그 무렵 대전지방법원의 차량 평균 매각가율(72.2%)과 청산비용 10%를 고려한 청산가치는 1,592만 원인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제2자동차를 시가보다 싸게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을 제16 내지 18, 을나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 E의 주장은 이유 없다.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

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하현국, 판사 김선영, 판사 김유성

별지

2011. 10. 4.

자동차의 표시

- 1. 자동차등록번호 :
- 1. 형식승인번호 : A08-1-00050-0974-3210
- 1. 차명 : 마이티닝동차
- 1. 차종 : 화물 중형
- 1. 차대번호 :
- 1. 원동기형식 : D4GA
- 1. 등록연월일 : 2011. 10. 4.
- 1. 최종소유자 : 주식회사
- 1. 사용본거지 : 대전광역시 대덕구